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저작권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통신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전 시험실 전·후면 등 별도 지정 장소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함.^[1] 다만 공단에서 지정 한 물품은 소지 가능함.^[2]

[1]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

①휴대전화, ②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이어폰 포함), ③ 태블릿, ④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2] 공단에서 지정한 소지 가능 물품

①신분증, ②수험표, ③필기구 ④수정테이프 ⑤전자계산기, ⑥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 지참공구 ⑦간식, ⑧아날로그 손목시계*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산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함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시 다음과 같이 대상 시험에 따라 소지·사용 가능한 시계 범위를 안내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아날로그 손목시계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PBT 시험	기술사 필기	허용	허용
	필답형 실기	허용	허용
CBT 필기시험		허용	제한
작업형 실기시험		제한종목 이외 허용	제한종목 이외 허용

※ 작업형 실기시험 중 아날로그 손목시계 및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소지·사용이 제한된 종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통신기기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또는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 중 시계류 소지·사용 제한 종목

□ 시계류 소지·사용 제한 종목

종목		아날로그 손목시계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직무분야	종목명		
건설기계 운전	굴착기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기중기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로더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롤러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불도저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지게차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천공기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음식 서비스	조리기능장	제한	제한
	한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중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일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양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복어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한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중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일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양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복어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미용	미용장	제한	제한
	미용사(일반)	제한	제한
	미용사(네일)	제한	제한
	미용사(메이크업)	제한	제한
	미용사(피부)	제한	허용
식품가공	조주기능사	제한	제한
	제과기능장	제한	허용
	제과산업기사	제한	허용
	제빵산업기사	제한	허용
	제과기능사	제한	허용
	제빵기능사	제한	허용
	떡제조기능사	제한	허용
	식품가공기능사	제한	허용